글 · 그림_김민석

주식투자 정보서비스 소비자피해 주의하세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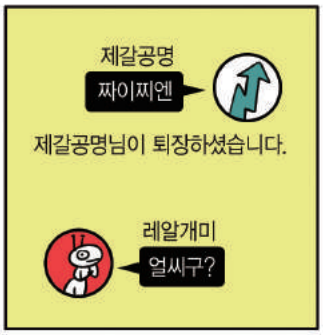

주식투자정보서비스 이용 중 제공받는 주식정보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손실이 발생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사업자가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환급을 거부·지연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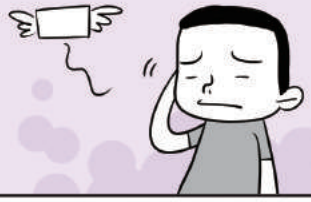

지난 1년간(2017년~2018년 1분기) 접수된
'주식투자정보서비스' 관련 소비자상담은 2,869건

특히, 2018년 1분기에는 1,014건이 접수되어
전년 동기 대비 268.7% 급증

위약금 과다청구 64.0%(435건), 환급거부·지연 30.5%(207건) 등 **'계약해지' 관련 피해가 94.5%(642건)로 대부분**이며, 다음으로 '부가서비스 불이행'이 2.1%(14건)

위약금 과다청구
-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보다 위약금을 과다하게 공제하거나
- 7일 이내 해지 시 이용일수 해당액만 공제해야 함에도 위약금을 공제
- 업체가 임의로 정한 1일 이용요금을 기준으로 공제
-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자료(투자교육자료, 종목적정가 검색기 등) 비용을 과다하게 차감

환급거부·지연
- 1년의 계약기간 중 유료기간을 1~3개월로 짧게 정하고 유료기간 경과를 이유로 환급을 거부

주의사항

고수익 보장, 할인 프로모션 등 과장 광고에 현혹되어 충동적으로 계약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.

계약 전 중도해지 환불기준 등 계약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세요.

교육자료, 종목 적정가 검색기 등을 제공하는 경우 해지 시 관련 비용을 차감하는지 확인하세요.

대금 결제는 신용카드로 하고 해지 요청 시 증거자료를 남겨두세요.

도움이 필요한 경우 소비자상담센터(국번없이 1372)를 찾아주세요.